

1. 개정이유

도시가스사업법 정의(제2조제4의3호)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은 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, 다만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바이오가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처분제한 규정(제8조의3)에 따라 현행 월 최대공급량(1만㎡)내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함

한편,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바이오가스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, 바이오제조사업자의 직공급 가능물량(월 최대공급량)을 확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를 30만 세제곱미터로 확대(안 제10조의2)
- 나.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('23.5.16)에 따라 ‘문화재보호법’등 연계 법률이 개정('23.8.8)되어 일괄 시행 예정('24.5.17)으로, 인용 법률이 들어간 법령의 제명 등 관련 사항 수정(안 별표1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4. 15. ~ 5. 27.)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중 “1만 세제곱미터를 말한다”를 “다음 각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 : 1만 세제곱미터
2.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: 30만 세제곱미터

별표 1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2(나프타부생가스·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)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1만 세제곱미터를 말한 다. <신 설> <신 설>	제10조의2(나프타부생가스·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) ----- ----- ----- 다음 각호와 같다 1.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 : 1만 세제곱미터 2.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: 30만 세제곱미터

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13.7.25>

보호시설 (제2조제1항제10호 관련)

1. 제1종보호시설

가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(4)의 경우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)

- 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2)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- 3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 - 4)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 - 5)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
 - 6)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
 - 7)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
 - 8)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
 - 9)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
 - 10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
 - 11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
 - 12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
 - 13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
 - 14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
- 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, 가설건축물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㎡ 이상인 것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가목·나목 및 라목에 따른 공연장·예식장 및 전시장에 해당하는 건축물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
- 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

마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
으로 지정된 건축물

2. 제2종보호시설

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

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
며, 가설건축물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
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㎡ 이상 1천㎡ 미만인 것